

# 코로나19 대응 고용유지지원금 안내

코로나19로 인한 피해로 휴업, 휴직을 실시한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## I 코로나19 대응 고용유지지원금

### 사업 목적

- **코로나19**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업주(개인, 법인)가 고용유지조치의 수단으로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휴업 기간 중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기 위함

### 사업내용

구 분	내 용
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일시적 경영난으로 <b>고용조정이 불가피*</b>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,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 지원</li> <li>*<b>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</b>  <b>고용유지조치의 실시 첫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달(기준달)의</b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말일의 재고량이 직전 연도의 월평균 재고량에 비하여 50% 이상 증가한 사업주</li> <li>2. 생산량이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의 같은 달의 생산량, 기준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생산량, 기준달의 직전연도 월평균 생산량대비 15%이상 감소</li> <li>3. 매출액이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같은 달의 매출액,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같은 달의 매출액 또는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 대비 15%이상 감소</li> <li>4. 재고량이 기준달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재고량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거나 매출액이 기준달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재고량이 계속 감소 추세</li> <li>5. 사업의 일부부서의 폐지.감축 또는 일부 생산라인의 폐지 등 사업규모의 축소조정을 행한 경우</li> <li>6. 자동화 등 인원감축을 가져오는 시설의 설치, 작업형태 또는 생산방식의 변경이 있는 경우</li> <li>7. 경영이 악화된 사업을 인수한 사업주로서 종전 사업 근로자의 60% 이상이 그 사업에 재배치되고 종전 사업 근로자가 그 사업 지분의 50%를 초과하여 취득하고 있는 사업의 사업주</li> <li>8. 당해 업종, 지역경제상황의 악화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사업주</li> </ol> </li> </ul>

• **(코로나19 관련 특별 지원)**

- **매출액 15% 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'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'로 인정될 수 있도록 요건 완화**

\*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4조제8호 : 당해업종, 지역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이 인정하는 경우

\*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업 서비스업, 숙박업, 보건업(병의원 등) 등

\* 또한, 위 예시 이외에도 지방관서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업종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으로 인정

**추진기간**

• '20.1.29. ~ 「국가 감염병 위기경보」 해제 시까지

**지원요건**

① **사전에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할 것**

(고용유지조치 실시일 전날까지)

-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(노사합의서, 회의록, 회의개최 시행 공문 중 택1) 첨부
- 근로시간 조정 등의 휴업은 취업규칙, 단체협약 등 기존의 근로시간을 알 수 있는 자료 첨부
- 매출 감소 대비표 또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입증서류\* 등 첨부  
\*예약취소증, 휴업권고서, 원자재수급관련 등

② **아래 중 어느 하나의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할 것**

- (휴업) 근로시간 조정, 교대제 개편, 휴업 등으로 역에 따른 1월간 단위의 전체 피보험자 총 근로시간의 **20%를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조치**를 행하고 휴업수당 등을 지급

\* 기준기간 :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날 속한 달의 6개월 전부터 4개월 전까지의 기간

**<근로시간 비교 판단 시 참고>**

\* 기준기간의 산정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수는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달(3월)의 피보험자수(50명)와 기준기간(9~12월)의 피보험자수와 동일해야 함. 따라서 기준기간의 피보험자수가 '19년 9월 80명, 10월 70명, 11월 60명으로 다른 경우에도 피보험자수 50명으로 산정

\*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는 연장근로(휴일근로)시간은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근로계약서, 취업규칙, 단체협약 또는 상당기간 계속적,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연장근로(휴일근로)만 포함됨, 일시적, 불규칙적으로 이루어진 연장근로(휴일근로)는 포함 안됨

- (휴직) **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하고 휴직수당 등을 지급**

※ **고용유지기간 동안 휴업(직)시간에 대해 평균임금 70% 이상 지급**

③ **계속 고용의무 준수(사업장 소속 전체 피보험자 대상, 고용유지 조치기간 및 이후 1개월 동안 고용 유지)**

• **지원수준**

- 사업주가 휴업·휴직기간에 지급한 수당의 **3/4(우선지원), 2/3(대규모)**

**지원내용**
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<b>지원한도</b> - 1일 최대 <b>6.6만원</b></li> <li>• <b>지원기간</b> - 연 <b>180일</b> 이내 지급(<b>인상된 수준은 2.1~7.31.간 한시적 적용</b>)</li> </ul>														
<b>지원제한</b>	<p>[아래 어느 하나 해당 시 지급대상에서 제외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계획신고된 고용유지조치기간과 이후 1개월간 정리해고, 사업주 권유, 희망, 명예퇴직 등 피보험자의 인위적 감원이 있는 경우</li> <li>• 고용유지조치 기간 동안 신규채용하는 경우</li> <li>• 3년이상 연속하여 같은 달에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, 매출액, 생산량 등의 감소 원인이 계절적으로 당연한 경우</li> <li>• 계획변경신청 없이 제출된 계획과 다르게 실시하는 경우</li> <li>• 고용보험료가 연체된 경우</li> </ul>														
<b>중복제한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<u>고용촉진장려금, 고용창출장려금,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, 청년추가고용장려금</u> 등과는 중복지원이 불가함</li> </ul>														
<b>지원절차</b>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text-align: center;"> <tr> <td style="width: 20%;"><b>사업주</b></td> <td>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* 이후 휴업은 월력에 의한 1개월 단위로, 휴직은 실시일 기준 1개월 단위로 계획서 재 제출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2">↓</td> </tr> <tr> <td><b>사업주</b></td> <td>고용유지조치 실시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2">↓</td> </tr> <tr> <td><b>사업주</b></td> <td>지원금 신청(매월)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2">↓</td> </tr> <tr> <td><b>고용센터</b></td> <td>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(2~4주)</td> </tr> </table>	<b>사업주</b>	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* 이후 휴업은 월력에 의한 1개월 단위로, 휴직은 실시일 기준 1개월 단위로 계획서 재 제출	↓		<b>사업주</b>	고용유지조치 실시	↓		<b>사업주</b>	지원금 신청(매월)	↓		<b>고용센터</b>	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(2~4주)
<b>사업주</b>	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* 이후 휴업은 월력에 의한 1개월 단위로, 휴직은 실시일 기준 1개월 단위로 계획서 재 제출														
↓															
<b>사업주</b>	고용유지조치 실시														
↓															
<b>사업주</b>	지원금 신청(매월)														
↓															
<b>고용센터</b>	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(2~4주)														

끝.